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과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및 진출 촉진을 위해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대상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관해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48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초·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과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각각 정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하며,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신설)

1) 이공계 진학 및 진출 촉진을 위한 초·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우수 과학기술인과 여학생 간의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과학친화사업, 이공계 대학으로의 진학지도사업 및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지도사업 등으로 함.

2)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우수 과학기술인과 여학생 간의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 능력 향상 지원사업, 과학기술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으로 함.

나.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 및 대상
(안 제16조의2 신설)

1)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은 여성과학기술인의 대체인력지원 사업,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유지를 위한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사회 문화 개선사업 등으로 함.

2)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은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함.

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조직·운영(안 제17조)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해당 지역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24. ~ 7.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초·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우수 과학기술인과 여학생 간의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2. 과학친화사업
3. 이공계 대학(「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의 진학지도사업
4.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지도사업
5. 그 밖에 이공계 대학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의 동기 유발을

위한 사업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우수 과학기술인과 여학생 간의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2.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 능력 향상 지원사업
3. 과학기술전문인력 양성사업
4. 이공계 대학원(「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으로의 진학지도사업
5. 이공계 분야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6. 그 밖에 이공계 분야 경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제9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3의2.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제10조제1항 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제12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교류 지원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및 보직목표 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재직목표 비율

2의2.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

제14조의 제목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지정하는 공공기관)”을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 지정 및 직무 등)”을 “(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로,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를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이 담당”을 “담당관이 담당”으로,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이 건의한”을 “담당관이 건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채용 촉진, 지위 향상,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환경 조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각각 위촉하고,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연구소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서 실시하게 하거나”를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제12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대체인력지원 사업
2.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유지를 위한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3.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사회 문화 개선사업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다른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2.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단체 및 기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조직·운영)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지역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③ 지역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2. ~ 5. (생 략) ⑤ (생 략)	제8조(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u>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u> (이하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라 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학생의 이공계 분야로의 진학 및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우수 여성과학기술인과 여학생 간의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2. 여학생에 대한 과학친화사업 3. 여학생의 이공계 분야에 대	제9조(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초·중등교육 과정에 있는 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우수 과학기술인과 여학생 간의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2. 과학친화사업 3. 이공계 대학(「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

한 진로지도사업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신 설>

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으로의 진학지도사
업

4.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지도사
업

5. 그 밖에 이공계 대학 진학 유
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의 동
기 유발을 위한 사업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학
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한 프
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
로 한다.

1. 우수 과학기술인과 여학생
간의 연계를 통한 후원사업

2.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 능력
향상 지원사업

3. 과학기술전문인력 양성사업

4. 이공계 대학원(「국가과학기
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
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대학에 설치된 대학
원을 말한다)으로의 진학지도
사업

5. 이공계 분야 취업·창업 정
보 제공 및 상담 사업

6. 그 밖에 이공계 분야 경력 개

②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관과 단체에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대학등(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위과정에 있는 재학생 중 각각의 학과 또는 학부(전문학사과정의 경우에는 공학계열과 공학계열로 분류될

발, 취업 촉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③ -----
제1항 및 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4. -----

-- 제1항 또는 제2항-----

④ -----

----- 제3항-----

-----.

제10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 ① -----
--- 법 제8조제1항-----

수 있는 계열을 합친 것을 말한다)별로 최근 3년간 여학생 비율이 평균 30퍼센트 미만인 학과 또는 학부에 대하여 재학생 중 여학생의 최종 목표비율이 30퍼센트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학부별로 매년 입학하는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이하 “목표비율”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신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 중에서 선발하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 -----

-----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지원 대상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제13조(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이하 “적극적 조치”라 한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설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적극적 조치의 대상기관에 권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교류 지원

제13조(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① -----
-----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및 보직목표 비율-----

-----.

1. · 2. (현행과 같음)

② -----

----- 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1의2. 재직목표 비율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생 략)

③ (생 략)

제14조(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제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제8조제1항제2호 중 국립대학 및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인 재직자가 30명 이상인 기관으로 한다.

제15조(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 지정 및 직무 등) ①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지식을 갖춘 부서책임자급 이상인 사람을 2년 임기의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과학기술

2의2.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

-----.

제15조(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 ① -----

-----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술 담당 직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은 자신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 4. (생략)

④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이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이 건의한 내용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 활동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라 담당관

③ 담당관

1. ~ 4. (현행과 같음)

④ ----- 담당관이 담당

----- 담당관이 건의한 -----

⑤ -----

----- 담당관 -----

제15조의2(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채용

촉진, 지위 향상,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 환경 조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 및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각각 위촉하고, 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연구소 등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제16조(교육훈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서 실시하게 하거나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등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의 여성과학기술인
2. (생략)
- ③ (생략)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6조(교육훈련 등) ① -----

--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나 -----

-----.

② -----

--.

1. 제12조제2항제1호-----

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사

업의 내용 등) ①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대체인력 지원 사업

2.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유지를 위한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지원사업

3.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사회 문화 개선사업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국 단위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는 업무를 활성화하고, 각 지역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활동을 조정·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이하 “전국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여성과학

1.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2.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단체 및 기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7조(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조직·운영)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이조에서 “지역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지역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기술인 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는 지역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국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 설>

③ 지역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	
연 락 처	(044) 202 - 4841